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8.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장려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적절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및 상충되는 조항 정리

- 제8조(출장공무원),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8조(연가일수), 제22조(공가), 제23조(특별휴가) 제2항 및 제4항 삭제

나. 경조사휴가 부여일수 개정(안 제23조제1항, 별표 3)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2일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5일

다. 장기재직휴가 부여 및 사용기준 개정(안 제23조제7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장기재직휴가 5일 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 10일 → 15일

- 20년 이상 재직자 : 20일 → 30일

-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5일 미만 잔여일 사용 가능

라. 모성보호휴가 신설(안 제23조제9항)

-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 : 5일

마. 보육휴가 신설(안 제23조제10항)

- 영유아(2세 미만)를 보육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 연간 5일(부부공무원의 경우 합산)

바. 포상휴가 신설(안 제23조제11항)

- 공무원이 재해·재난, 축제 및 선거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 시책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 5일 이내

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구미시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소속 기관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를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 중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거나,”를 “주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킴으로써”를 “준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모든 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차별없이”를 “차별 없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화목 단결하여”를 “화목 · 단결하여”로 한다.

제7조 제목 “(당직및비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를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를 “사전 허락 없이”로, “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의3에 따라 점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 감독을 받는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지휘 감독을 받는다”를 “지휘 · 감독을 받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하게된”을 “해당하게 된”으로, “당해 점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지휘, 감독”을 “지휘 ·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를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

여 필요할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앞에 “제2장 근무시간등”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휴가”를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신청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를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기타”를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 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을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신청”으로, “없는한”을 “없는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연도의 잔여”를 “해당 연도의 남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당해연도에”를 “해당 연도에”로 하고, 같

은 항 후단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한다.”를 “한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이를 연가일수”를 “연가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상외”를 “부상 외”로, “누계8시간”을 “누계 8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공무원의”를 “소속 공무원 이”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질병이나”를 “질병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를 “감염병에 걸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년180일의 범위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7일이상일”을 “7일 이상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으로,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 이
상 20년 미만”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10일”을 “15일”로, “20일의 장기재직 휴
가”를 “30일의 장기재직휴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제2항”
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2. 1회 장기재직휴가는 5일 이상 10일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5일 미만의 잔여일을 사용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7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회 휴가는 5일 이상으로 하되”를
“장기재직휴가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신청자”를
“장기재직휴가 신청자”로, “기록·관리 하여야한다”를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
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 ⑩ 2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
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
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시장은 공무원이 재해·재난, 선거사무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 중 “이 조례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25조의2 중 “범위내에서 공무외”를 “범위에서 공무 외”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구미시 조례 제1177호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미시 조례 제685호에 따라 삭제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제7항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

한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장 총칙</u>	<u><삭 제></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공무원법</u> 」 및 「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 」에 따라 <u>구미시 지방공무원</u> -----.
제2조(복무선서) ① <u>공무원은</u> 「 <u>지방공무원법</u> 」(이하 “법”이라 한다) <u>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u> 취임할 때에 <u>소속 기관장 앞에서</u>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u>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은 -- <u>제47조에 따라</u> ----- <u>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② 제1항의 선서는 <u>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u>	② ----- <u>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u>
③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은 <u>별표1의2와 같이 한다.</u>	③ ----- <u>별표 1의2</u> -----.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u>성실로서</u>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 ----- <u>성실로써</u> ----- -----.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u>아</u>	제3조의2(비밀엄수) ----- ----- ----- ----- ----- <u>아</u>

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생략)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니 된다.

1. ---- 따라 -----

2. -----

----- 주
거나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
----- 준수
하여 -----
-----.

② ---- 별표 2-----
-----.

제5조(친절·공정) ① -----

----- 업무-----
-----.

② (생 략)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당직및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② (현행과 같음)

③ -----
----- 차별 없이

-.

제6조(근검·절약) ① ----- 화목·단결하여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

-----.

② -----
----- 그 밖에 -----

-----.

③ ----- 사전 허락 없이 -----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생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원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곧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

----- 아니 된다.

④ -----
- 범위-----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

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다
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
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
게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
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
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
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
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받는다.-----

----- 지휘

· 감독을 받는다.

② -----

----- 해당하

게 된 -----

- 시장-----

---.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에 따라 -----

지휘·감독-----.

② -----

----- 해당 -----

-----.

③ -----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
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
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
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할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
다.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
칙」(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2장 근무시간등

제3장 휴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
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
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
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

--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
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15
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 근무
중 -----

-.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
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별표 4 -----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신청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 --
-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신청-----

- 없는 한 -----
-.

<삭 제>

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3에서 규정하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대상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생략)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

⑥ ----- 해당 연도의 남은 -----

----- 범위-----

----- 해당 연도에 -----

----- 별표 3-----

-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

연가일수-----.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상 외-----

----- 누계 8

시간-----.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

-----.

-----.

제21조(병가) ① -----
소속 공무원이 -----
----- 때에는 60일의 범위-----

----- 질병 또는 -----

-----.

1. (현행과 같음)

2. 감염병에 걸린 -----

② ----- 공무원-----

-----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

③ ----- 7일 이상일 -----

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ㄱ.

<삭 제>

9. 올림픽,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자를 고용 계약하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담당, 주무급이상의 자는 제외)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제23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삭 제>

③ 여성공무원-----

--. -----
-----.

<삭 제>

여자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
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
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
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
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
다.

⑦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
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
2항을 따른다.

<신 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
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⑥ -----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

⑦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
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0일의 장기재직
휴가-----
-----.

1. -----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2. 1회 장기재직휴가는 5일 이
상 10일 이내로 사용하여야

2. 1회 휴가는 5일 이상으로 하
되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다.

3.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을 경
유하여 복무업무 총괄부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무
업무 총괄부서장은 이를 공무
원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
하여야한다.

⑧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한다. 다만,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5일 미만의 잔
여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 장기재직휴가는 -----

-----.

4. 장기재직휴가 신청자-----

-----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⑨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은 모
성권 보장을 위해 임신 16주 이
내에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
다.

⑩ 2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일수를 모
두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
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
는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
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시장은 공무원이 재해·재

	<u>난, 선거사무 및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u>이 조례</u>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 <u>지방</u>
<u>가</u>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	<u>공무원 복무규정</u> 」 또는 <u>이 조</u>
<u>가</u> 는 결근으로 본다.	<u>례에서</u> -----.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	제25조의2(국외여행) -----
가기간의 <u>범위내에서</u> <u>공무외의</u>	----- <u>범위에서</u> <u>공무 외</u> -----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	-----
다.	-.
제26조(시행규칙) <u>이 조례</u> <u>시행에</u>	제26조(시행규칙) -- <u>조례의 시행</u>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u>시행규칙</u>	<u>에</u> ----- <u>규칙</u> -----
<u>으로</u> 정한다.	-----.
구미시 조례 제1177호 구미시 지	구미시 조례 제1177호 구미시 지
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 부칙	례 부칙
제1조(시행일) (생 략)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u><삭 제></u>
<u>경과조치</u>) <u>이 조례</u> <u>시행 전에</u>	
<u>구미시 조례 제685호에 따라</u> <u>삭</u>	
<u>제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u>	
<u>조례</u> 」 제23조제7항을 적용하여	

<u>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u> <u>무원은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u> <u>지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사용할</u> <u>수 있으며, 잔여일수가 5일 미</u> <u>만이라도 1회로 사용할 수 있</u> <u>다.</u>	
---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

가로 구분한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3년 이상 4년 미만	14
6월 이상 1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9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2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에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제7조의3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소관 실·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문 창 균
	담 당	윤 희 영
	담 당 자	이 유 립 (480-6754)